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12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채윤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이정은

변론 종결2024. 11. 6.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3. 7. 3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3. 7. 31. 접수 제16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3. 7. 31. 접수 제16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각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제1신용보증약정	대출보증	2015. 05. 06.	2016. 05. 06.	24,65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21. 12. 15.	2026. 12. 15.	19,000,000원
합계	43,650,000원			

나. B는 C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2023. 11. 29.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결국 원고는 2024. 3. 7., 2024. 6. 18.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위 각 은행에 합계 38,049,7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31.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거래가액 188,000,000원,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특별한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23. 11. 29.자 B 신용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과 B의 C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이 경우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각 대위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인 위 각 은행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은 변제자인 원고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위 각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B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B의 소극재산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63,287,445원이다.

1	원고	18,700,000
18,802,731		
3	피고(A)	10,000,000
4	소외 F	45,000,000
5	C 은행	109,843,113
6	G	475,000,000
7	H	25,177,251
8	I 카드	3,292,815
9	J	9,310,510
10	K 카드	29,090,245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9,070,780
소계	763,287,445	

2) B의 적극재산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88,000,000원, 양주시 L, L

각 토지의 시가 합계액이 861,90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B 소유 제주도 토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소유의 제주시 M, N, O 각 토지(이하 'B 소유 제주도 토지'라고 한다)에는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36,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과 채무자 P,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이 P 소유인 제주시 Q, R, S, T, U, V와 함께 총 9필지에 설정되어 있고, 위 9필지의 총 가액이 921,574,000원(B 소유 제주도 토지 가액 290,300,000원 포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무자 E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위 9필지 부동산은 모두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P인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앞서 살펴본 물상보증과 달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나머지 토지가 채무자 P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인 B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P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이를 B 소유 제주도 토지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계산하면, B 소유 제주도 토지 가액 290,300,000원에서 166,952,409원(B 소유 제주도 토지 가액

290,300,000원 ÷ 9 필지 총 가액 921,574,000원 × 530,000,000원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23,347,591원이 B 소유 제주도 토지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1,173,252,591원이고 (= 188,000,000원 +
 861,905,000원 + 123,347,591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가액
 188,000,000원을 공제한 985,252,591원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채무면탈 등을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에게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적극재산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우인선

별지

1)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금만 포함한다.

D조합(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금은 채무자가 E이고, B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므로

소극재산으로 포함하지 않는다.